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(허성무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19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23.

발 의 자 : 허성무 · 윤준병 · 임오경
윤종균 · 권칠승 · 송재봉
조인철 · 이강일 · 조계원
최혁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5년 8월에 국무조정실 소관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발표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, 공적개발원조(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, ODA)와 관련하여 총 39개 기관이 1,820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ODA 사업예산규모는 6조 343억원으로 2026년 예산안의 약 1%에 해당함.

그러나 ODA 관련 사업이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되어 편성·집행됨에 따라 국회의 관련 사업 및 예산 심사는 외교통일위원회,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. 그 결과 ODA 관련 사업 간 유사·중복 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워 ODA 관련 사업의 통합적인 심사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존재함.

이에 ODA 등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사하는

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업 및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46조의4 신설).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6조의4(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)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둔다.

1.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법률안의 심사
2.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예산안·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
3.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주요 안건의 심사

②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81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로 본다.

③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20명으로 한다. 이 경우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.

④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, 보임되거나

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

⑥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⑦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,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
⑧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6조의4(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)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둔다.</u> <u>1.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법률안의 심사</u> <u>2.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예산안·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</u> <u>3.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주요 안건의 심사</u> <u>②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81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로 본다.</u> <u>③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20명으로 한다. 이 경우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</u>

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.

④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,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

⑥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⑦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,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
⑧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

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